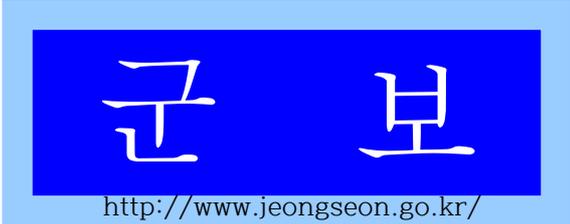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1호 2022. 11. 1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37호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278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소로3-26호선)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22-1296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5
- 정선군 공고 제2022-1313호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8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4호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5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37호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고시

1. 정선군 고시 제2022-89호(2022. 07. 01.)호로 정비계획 변경 수립 고시된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의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 준공완료 고시된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정 선 군 수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
- 면적 : 172,720㎡

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 사업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라. 준공인가의 내역(상세 내역 별첨)

- 정비기반시설
 -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상수·하수관망 정비 등
- 공동이용시설 확충
 - 어린이공원, 공공주차장, 다목적광장 등

마.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완료 고시

바. 정비구역 지정 해제일

-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완료 고시 다음날

사.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주택팀 (033-560-2472)로 문의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278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소로3-26호선)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정선군 고시 제2021-93호(2021. 7. 9.)로 최초 결정된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소로 3-2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4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3-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소로3-26호선) 공사
- 2) 명 칭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소로3-26호선) 개설공사(여량농협 나전지점 인근)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명 | 군계획결정 | | 실시계획인가 | 비 고 |
|-----|-----------|----------------|-----------------|-----|
| | 세부시설명 | 연장·폭원 | 금회 변경 시행 | |
| 도로 | 소로 3-26호선 | L=119m, B=5.0m | L=81.6m, B=5.0m | |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북평면장)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2. 11. 4. ~2022. 11. 18.)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

| 순 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 해 관 계 인 | | |
|--------|------------|--------|--------|------------|--------|-------------|--------|-----------------------|--------|--|
| | | | | 공 부 | 편 입 | 주 소 | 성 명 | 관 계 인 | 성 명 |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
| 1 | 북평면 북평리 | 665-7 | 도 | 1,956.7 | 38 | | 정선군 | - | - | - |
| 2 | " | 690-14 | 대 | 112.0 | 3 | | 정선군 | - | - | - |
| 3 | " | 693-9 | 전 | 374.4 | 356 | | 정선군 | - | - | - |
| 계 | | | | 2,443.1 | 397 | | | | | |

정선군 공고 제2022-1296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1일

정 선 군 수

- 가.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 다.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라.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마.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행정복지센터
- 바.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22. 11. 11. ~ 2022. 11. 25.)
- 사.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2-1313호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01.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02.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3.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4.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06.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07.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8.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 09.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 10.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13.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14.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
- 15.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22. 11. 14.

정 선 군 수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4호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정선군의회회장

1. 제정이유

- 정선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청년농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예고기간 : 2022. 11. 8. ~ 11. 18.(초일불산입 / 10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
| | 찬 성 | 반 대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지원사업
3.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2호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이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에 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영어 활

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5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현행화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목적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 (안 제1조)
- 2023년~2026년도 월정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 규정 (별표)
 - 2023년도: 연 2,721만원(월 227만원)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여비지급기준 근거조항 현행화 (안 제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으로 변경
 - 업무담당자 → 의정팀장

3. 예고기간 : 2022. 11. 8. ~ 11. 18.(초일불산입 / 10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
| | 찬 성 | 반 대 | | |
| | | | | |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로, “의원(이하 “의원” 라 한다)” 을 “의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 “의원” ” 을 “ “의원” 이”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36조 관련 별표 5” 를 “제33조 관련 별표 6”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 기준년도 | 지급 기준 금액 |
|-------|---|
| 2023년 | 월 2,268,000원으로 한다. |
| 2024년 |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 2025년 |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 2026년 |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u>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33조</u> ----- <u>의원</u>----- ----- ----- ----- ----- -----.</p> |
| <p>제2조(의정활동비) ①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 ~ ④ (생략)</p> | <p>제2조(의정활동비) ①----- ----- “의원”이-----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p>제4조(여비) ①·② (생략)</p> <p>③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u>제36조 관련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u>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p> | <p>제4조(여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33조 관련 별표 6</u>----- ----- <u>지급기준</u>----- -----.</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위원회는 그 의정비심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